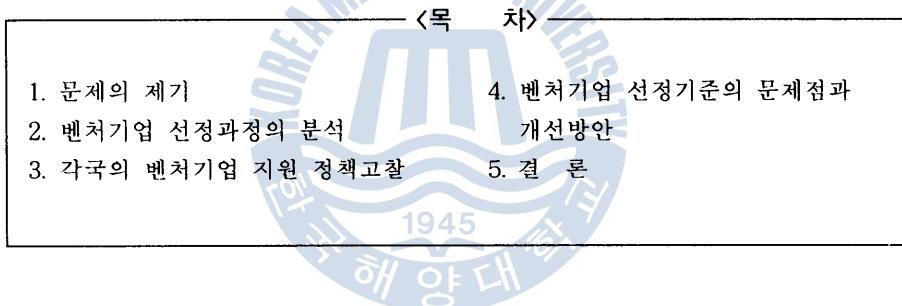


벤처기업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수* · 김성은**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Process of High-Tech Business Selection

Choi, Jong-Soo and Kim, Sung-Eun



Abstract

This study employed the documentary analysis methods, such as the analysis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analysis on various legal forms, and the analysis of the data of the precedent example of foreign countries, as its researching way,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problems found in the Special Law for Upbringing Venture Business.

The problems found in the Special Law for Upbringing Venture Business brought the outcome of the venture high-tech business' alienation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because the officials failed in distinguish the venture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medium-sized enterprises. Therefore, this thesis analyzed those laws that have brought about these problems, and suggested to amend the Special Law for Upbringing Venture Business, so as to encourage an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venture business that is to be a basi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this country.

Firstly, to revise the existing law to confine the range of selecting the venture companies to the area of the highly updated technology. Secondly, to delete the existing specified conditions for selecting the venture companies, to newly-established regulations concerning the conditions of the venture company evaluation organization, the human power composition, and other business affair-related duties, and to decide the specific standards for selecting the venture companies through the specified evaluation organizations. Thirdly, to expand the range of the objects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al funds up to the individual research programs without any legal business forms.

1. 문제의 제기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및 경제적 기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벤처붐을 가져왔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금융, 조세, 입지 등의 다방면에 지원을 해주었고, 상당수의 벤처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과도한 지원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혁신과 경영실적 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의 추구에 치중하게 하고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도덕적 해이¹⁾(moral hazard)에 빠지게 한 사례를 놓게 했다. 그리고 중앙집중적 지원정책은 벤처기업 선정과 관리, 지원에 있어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여 자본이득을 노리는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적 의지로 1997년 8월 28일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의 벤처기업 선정요건²⁾에 합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

1) 미국 예일대학의 교수 R. Shiller는 첨단기술 기업이 미래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그 수익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쉽지 않아서 이를 기업의 주가형성 및 거래가 고의적인 사기꾼에 의해 조작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 회사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 구개발비의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을 사업화 하는

정기준에 의하면 첨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벤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고, 오히려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연구개발 지원분야를 소외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 물론 동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무시 할 수 없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보완으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세계경제에서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될 첨단기술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 이와 분리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 및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한 문헌 분석방법과 외국의 벤처기업관련 정책의 성공사례를 고찰하는 사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동법의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벤처기업 선정과정 분석

2.1 벤처기업 선정기준 제정의 의의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벤처기업을 ‘소수의 핵심적 기술창업인들이 기술혁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을 말한다. 이는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며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여 성취하려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³⁾

또 다른 측면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첨단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경영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한다⁴⁾. OECD는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Bollinger 등은 ‘소수의 핵심 창업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축적을 통해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기대수익이 큰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⁶⁾.

이러한 벤처기업 정의들의 공통점은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창출 및 생산성 증대의 파급효과를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암시해주고 있다

기업’,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이진주, 1984, 「모험기업·모험자본·기술창업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4) 홍성도, 1997, 「벤처비지니스·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5) 이재길, 1997, “한국 벤처기업 육성정책”, 벤처기업협회·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 주최, 「한·미 비교를 통한 벤처산업 발전 전략」, ’97 한·미 벤처포럼.

6) Bollinger et al., 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vol. 12.

정부에서도 1997년 8월 28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강력한 법적 의지를 보였다. 이 법은 2007년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 법은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해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인력 및 인력 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동법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의 증명을 거쳐 확인기관(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확인 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2.2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선정과정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창업후 7년이내에 창업투자회사⁷⁾(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⁸⁾(조합)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과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①벤처캐피탈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증명한 서류와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⑤ 투자계약서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2.3 연구개발 투자기업의 선정과정

연구개발 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표1>의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①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확인·증명한 서류 ②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가 제출되어야 한다.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기술은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창업자(업력 14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회사이다.

8)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은 회사별로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 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신기술의 기업화 등을 지원하는 투자와 융자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이외에 자금의 운용관리,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대여, 기술개발제품 등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에 관한 채권의 회수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1> 업종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5~37) - 의약품(242) -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30) - 전기기계(31) - 반도체 및 전자부품(32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3) - 기타제조업	6%이상 7%이상 6%이상 6%이상 6%이상 8%이상 5%이상
도매 및 소매업(50~52)	6%이상
통신업(64)	7%이상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72) (인터넷산업)	10%이상 (5%이상)
기타산업	5%이상

2.4 신기술 개발기업의 선정과정

<표2> 신기술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사 업 명	주관기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사업	산업자원부
우수신기술인증사업(NT),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	기술표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컴퓨터프로그램제작권사업	정보통신부
국산신기술 제품개발 이용사업, 신기술이용사업(KT),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과학기술부
영상·음반·비디오물·게임물 산업 또는 관광산업 등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 사업비용의 20%이상을 출자 받은 사업 (나) 다음의 사업 중 당해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대비 300%이상인 사업 ① 컴퓨터그래픽 합성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지식을 이용한 영화·방송프로그램·음반·비디오 또는 게임물 제작 ② 3D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단순 하청제작은 제외) ③ 게임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에 한함) ④ 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	문화관광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환경부
건설신기술이용사업	건설교통부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	농림부 해양수산부

신기술개발기업은 첫째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 또는 신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경우나, 둘째 <표2>에 해당하는 신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경우에 벤처기업으로 선정된다.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또는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인 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가 구비되어야하고, 신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개별 신기술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가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에 근거(제6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 지도사가 확인·증명해야 한다.

2.5 기술평가기업의 선정과정

기술평가 기업은 첫째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⁹⁾이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과 둘째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은 평가기관의 벤처기업 평가서와 평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벤처기업에 지정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 기업 중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일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단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원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또는 심사청구 및 출원중인 기술은 평가기관의 벤처기업평가서 이외에도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 또는 개별 사업별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6 벤처기업 범위에 네가티브 시스템 적용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범위를 지금까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여 Positive System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0년 7월부터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여관업 등 48개 업종(산업 분류단위 5단위 기준)을 제외한 전 업종(1,144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렇게 벤처기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간의 기술융합이 두드러지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많은 창업자와 기업인들이 업종에 관계 없이 벤처기업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데 대해서는 의미를 가질 수

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평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과학기술평가원 3. 한국벤처연구소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7.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 산업기술정보원

있다.

그러나 지정요건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주도하에 그 수많은 대상기업을 철저히 확인,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결국 벤처기업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 대상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낭비와 재정의 부실 및 금융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3.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고찰

3.1 각국의 벤처기업 선정 범위

3.1.1 미국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벤처기업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high-technology firm, new technology based firm, new business with high return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첨단기술이란 바이오, 신소재, 컴퓨터, 에너지(원자나 태양) 등의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을 주로 의미한다. 이런 신기술 관련 연구서비스나 이를 직접 이용 혹은 응용하여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을 미국의 벤처기업이라 보고 있으므로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된다.

미국 벤처기업은 한국과는 달리 정확한 선정기준이나 관련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표3> 미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자료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 산업이 인터넷 관련 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 반도체등 신소재 산업, 생명공학, 에너지관련 산업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미국 벤처기업의 범위가 정의에서 보듯이 최첨단 신기술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표3>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 동향

(단위 : 100만 달러)

산업 영역	1999년	1998년	증감(%)
인터넷 관련 산업	18,757	3,285	471.0
커뮤니케이션	8,366	3,318	152.1
컴퓨터소프트웨어와 서비스	7,500	3,833	95.7
의학 / 건강	2,457	2,392	2.7
반도체 / 전자	1,740	827	110.4
소비자 관련	1,712	1,084	58.0
컴퓨터 하드웨어	1,309	550	138.1
바이오테크놀러지	1,182	1,030	14.8
산업 / 에너지	751	441	70.2
기타 제품	4,562	2,450	86.2
전체	48,336	19,210	151.6

출처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Venture Economics

3.1.2 일본의 벤처기업

현재 일본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첨단기술 개발지향형으로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기업군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기술을 융합하거나 기술과 틈새시장수요를 일치시켜 신시장을 개척하는 뉴·서비스산업에 속한 기업군이다.

일본에서는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①하이테크·하이터치형 벤처기업(연구개발형·고객밀착형제조업) ②정보·소프트형 벤처기업(정보관련산업·소프트웨어산업) ③서비스형 벤처기업(뉴비지니스·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거나, ①혁신기술의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 ②기존산업의 신기술 이용에 따른 신사업 ③신서비스 분야로 구분하기도 한다.

1998년 「일경벤처비지니스연감」에 나타난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전기·전자’가 가장 높은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서비스·기타’가 12.8%, ‘기타 제조업’ 11.3%, ‘소프트웨어’ 10.9%인 반면 ‘목재·종이’, ‘유리·세라믹’, ‘운송용기기’, ‘출판·인쇄’ 등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

일본의 연구개발형기업육성센타에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벤처캐피탈의 업종별 투자잔액 구성비는 제조업이 32.9%로 가장 많고, 뒤이어 도매·소매업·음식업이 15.6%, 기타 서비스업 13.6%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속하는 전기 기계 기구·전자 응용 장치 등 제조업 및 기계, 기구 등의 비중이 높다. 이전 대비 투자 잔액의 신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통신업으로 150% 증가하였고, 정보처리서비스업도 37.1% 투자액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비·서비스 관련 산업이나 건설업의 비중이 높고, 바이오나 정보통신관련 등 이른바 하이테크 산업의 투자는 전체의 2할을 넘지 못하고 있다.

3.1.3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경제는 농업과 첨단기술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제조업에 크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 들어와 1995년까지 매년 6%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세계의 정상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원인 중 하나가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무역자유화, 탈규제, 사유화, 세금제도 개선 및 세금감면 등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켰다. 1998년 11월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은 4,000여개이며 매년 거의 1,000개의 기업이 창업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율은 최근에도 25~30%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의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수출액의 약 40%를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의 결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중심의 벤처기업 성장과는 달리 이스라엘 정부

는 독특한 인큐베이터 제도와 기금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시켜 왔다. 1998년 기준으로 벤처기업 인큐베이터 예산 3천만달러의 주요 지원 분야를 보면 전자 27%, 소프트웨어 20%, 의료장비 17%, 화학 27%, 기타 9%로 구성되어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각국의 벤처기업 자금조달 유형

3.2.1 시장중심의 미국 벤처기금

미국은 개인투자자에서부터 벤처캐피탈, 공공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창업초기단계에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특히 엔젤이라고 부르는 개인투자자는 창업기 벤처기업에 대한 리스크머니의 공급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시기는 특히 벤처기업의 사업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실행 단계에 적극적으로 출자하고 있다. 이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적으로 큰 투자수익을 올리고, 국가적으로는 첨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엔젤이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설립 직후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설립 초기에는 생산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재고부담도 없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이 시기는 연구개발단계인 데다 연구결과의 제품화 여부가 불확실하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곤란한 시기이다.

미국의 엔젤에는 대부호 및 거액의 창업자, 이익을 거둔 기업가 등 자산가도 있지만 연 수입 10~20만 달러 정도의 개인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엔젤의 투자금액은 벤처캐피탈 투자액의 5~7배 규모인 약 200억 달러 내외, 투자건수는 5만건(벤처캐피탈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엔젤은 벤처캐피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소기업이나 신설험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당 투자금액이 40만 달러 정도로 소규모이다. 또한 5~20명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당 평균 투자액은 2~8만 달러이다. 현재 엔젤의 총 투자잔액은 2,000억달러(벤처캐피탈의 5~6배), 엔젤수는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투자는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대부분의 경우 제품출하가 확실한 단계부터 투자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벤처기업은 생산 설비 자금 등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벤처캐피탈이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설립 붐이 일기 시작해 급격히 확산되었다. 1999년의 경우 벤처캐피탈 펀드의 수는 총 409개이고 이들이 투자한 총액은 465.4억달러로 이는 1998년 275개 벤처캐피탈 펀드에 의한 279.1억 달러보다 66.9% 증가한 금액이다. 이러한 성장은 최근 몇 년간 벤처캐피탈의 투자 수익이 높았음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벤처캐피탈 성격을 살펴보면 독립계가 78%, 금융기관계 및 사업회사계가 각각

10%, 12%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계 벤처캐피탈 회사는 1개의 기업으로서의 조직력보다도 개개인의 벤처 자본가로서의 능력이 필요하며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지식을 갖춘 전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독립계 벤처캐피탈이 많은 만큼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개성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일정한 전문분야로의 투자에 특화한 벤처캐피탈, 창업초기의 기업에 투자를 한정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기업의 성장단계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은행업무 및 리스 등 타 사업을 경영하는 벤처 캐피탈 등 매우 다양하다.

3.2.2 일본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경로

일본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형태는 벤처캐피탈 본체의 투융자와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사업조합을 설립하여 투융자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본체투자 및 조합투자에 의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보면 거품붕괴 후에 일시적으로 축소를 보였으나 1993년 이후 다시 회복기조에 있지만 미국의 투자잔액과 비교한다면 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벤처캐피탈 펀드를 구성하는 공급원을 1998년 일본중소기업청의 보고를 통해 투자사업조합에의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두는 '사업법인'이고 비율은 45.8%로 출자금액 전체의 반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시중은행·장기신용은행'(16.3%), '지방은행·제2지방은행'(8.6%), '신용금고·신용조합 등'(4.8%) 등으로 은행계의 조합원만으로 약 3할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증권회사'(2.4%), '생명보험회사'(7.6%), '손해보험회사'(1.8%)를 포함하면, 금융기관만으로 약 4할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해외투자는 4%정도로 낮고, 개인의 출자비율도 1.1%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기금'(51%), '재단기금'(12%)이 7할 정도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연금의 투자가 부족하다.

3.2.3 이스라엘의 정부주도형 벤처기금 조성

이스라엘은 창업지원을 위한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기금의 조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정부주도의 벤처기금으로 요즈마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여 많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 벤처기금은 이스라엘내 국제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지향적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민간부문의 벤처캐피탈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를 물색하고, 국제기업들이 이스라엘내 지사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활동을 개시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간 요즈마는 다수의 해외투자가들이 포함된 10개의 펀드를 조성하였고 15개사에 직접 투자를 하였다. 이후 요즈마의 경영진은 시장의 자급적 구조가 성숙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7년 3월 매각하여 민영화하였다. 이스라엘의 국가주도 벤처캐피탈 육성정책은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경우이다. 1991년 1개의 벤처캐피탈에서 현재는 80여개의 펀드가 운영중에 있다. 자금의 절반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자금이 1994년에 2600만달

리에서 1998년 30억달러 유입되었으며 이들 중 50% 이상이 벤처기업에 투자되었다. 초기 해외자금은 유럽에서 유입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미국에서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미국자금의 유입이 1997년 대비 1998년에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각국의 벤처기업 창업자 육성지원

3.3.1 미국 연방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청(SBA)을 중심으로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주요업무는 자금지원, 경영관리지원, 출판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금지원으로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그리고 채무보증 및 소액융자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혁신연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기술혁신을 자극하고,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활용하고, 기술혁신에 소외계층(소수인종 등)의 참여를 고무시키고, 연방정부의 연구개발로부터 상업화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금을 NASA, 국방성 등 10개 주요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일부를 벤처기업전용으로 할당하는 방식에 있으며, 실용화 기술청(Commercial Technology Office)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 할당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최근에는 기관별 연구개발자금의 2.5%까지 할당하고 있다.

각 연방기관이 SBIR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연구계획서를 준비해 발표하면 중소기업은 간단한 양식에 의해 직접 각 연방기관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출하고, 각 연방기관은 계획안을 취합해 과제선정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계약금의 교부를 결정하게 된다.

SBIR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의 기술적인 이점과 실현가능성을 심사하여 6개월의 연구기간동안 최고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시제품 제작의 단계로 최고 2년동안 75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세 번째 단계는 상업화 단계로 SBIR 프로그램에서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지만 벤처캐피탈 등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하는 연방기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제품, 신 공정, 신 시스템의 연구, 개발, 상업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것이다. SBIR과의 차이점은 첫째, 지원하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 SBIR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단독연구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만 지원하며 셋째, STTR 프로그램이 지원 규모가 크고 지원기간도 길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도 3단계에 걸쳐 지원되는데 1단계는 대략 1년에 걸쳐 10만 달러까지의 기금이 아이디어나 기술의 과학적, 기술적, 상업적 타당성을 위한 검토 작업에 투입된다.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최장 2년간에 걸쳐 최고 50만 달러까지의 기금이 투입된다.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고 실용화 잠재력이 고려되는 단계이다. 3단계는 2단계 연구에서의 혁신이 시장에서 전개되는 과정으로 어떤 STTR자금도 지원되지 않으나 민간부분이나 다른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3.3.2 이스라엘의 기술 인큐베이터 제도

이스라엘 정부는 벤처기업의 과학기술적 아이디어를 상업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2단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자본력이 없는 개인의 신기술 또는 혁신적 기술 아이디어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설비와 행정업무 및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을 조성하여 민간차원의 창업자금이 조성되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했다.

기술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는 혁신적 기술 아이디어의 개발이나 이를 상업화하기 위한 창업기회를 예비 기업가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통산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수석과학관실(Chief Scientist Office)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1년 구 소련권 유태인들의 대대적인 귀환과 관련하여 과학두뇌를 산업발전에 활용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기술인큐베이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마케팅 활동의 지원,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무자원의 확득을 지원, 연구개발팀의 형성과 조직화를 지원, 카운셀링, 안내, 지도사업 실시, 비서 및 관리적 서비스, 운영, 구매, 회계, 법적 어드바이스, 자본충당과 마케팅 사전준비의 지원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인큐베이터 단계에서는 국가가 프로젝트 수행 예산을 제공하며, 그 책임도 국가가 떠맡는다. 인큐베이터의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다만 그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것으로 한다. 프로젝트당 최대지원금은 29만불로서 2년까지 가능하며, 인큐베이터 운영비용으로 연 17만불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회사의 초기 소유권은 개발자/기업가에게 최소 50%, 직원에게 최소 10%, 자금후원자에게 최대 20%, 인큐베이터에게 최대 20%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20% 지분을 통해 부분적 소유권을 가짐으로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회수하고 있다.

1998년 말 시점으로 476개 프로젝트가 인큐베이터를 떠났으며 이들 중 51%인 239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188개 프로젝트가 5만불에서 18백만불 사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졸업한 프로젝트 중 41%중 237개는 완결되었고 나머지 51개 프로젝트는 협상 중에 있다.

3.4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고찰을 통한 시사점

일본 벤처기업은 기술력이나 독창성을 뿐만 아니라 신시장 창조, 기존기술의 융합, 틈새

시장 개척, 기존기업의 사업전환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과 자금조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요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본과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눈에 띠는 성공을 보지 못하였다.

앞서 고찰한 결과에서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은 시장주도와 정부주도라는 두 가지 상반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눈부신 발전을 거두고 있다. 이들 국가의 성공요인은 한국 벤처기업과 그 정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미국 및 이스라엘은 벤처기업 개념에서부터 high-technology firm, new technology based firm, new business with high return 등을 사용하면서 기술력이나 독창성을 강조하여 바이오, 신소재, 컴퓨터, 에너지 등 첨단기술분야로 집중적이 지원을 통해 일정 시점이후에는 경제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업종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을 실시하였다.

1999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벤처기업에 선정된 산업별 유형을 <표4> 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는 1.8%와 3.6%, 3.9%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전기전자와 기계금속부문은 19.5%와 1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첨단기술분야가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표4> 벤처기업의 산업별 분포

	소프트 웨어	인터넷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금속	기계장비	화학화공	섬유피혁	환경	생명공학	건설	비금속광물	기타
비율 (%)	9.7	1.8	11.3	3.6	19.5	2.6	14.6	6.6	7.1	2.7	3.9	1.9	2.8	1.8	10.1

자료 : 2000 「벤처백서」, 중소기업청

둘째, 미국과 이스라엘은 벤처자금 조달에 있어서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내의 풍부한 민간 자본들이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 형태로 벤처 산업의 수익성 등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엔젤투자의 보편화와 독립계 벤처캐피탈의 개성 있는 투자방식이 벤처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벤처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해 주는 협력업체간을 연결시키고, 벤처기업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미국의 에이스넷(ACE-NET)¹⁰⁾과 개라지닷컴¹¹⁾(garage.com)의 예와 같이 민간의 자원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

10) 미국 중소기업청은 1996년 10월부터 개인투자가와 벤처기업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Ace-Net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첨단 네트워크를 통해 엔젤과 벤처기업을 적극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미국내 엔젤의 투자를 원하는 벤처기업이 30만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국내 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였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을 형성하고 외국자본 유입을 원활히 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의 근간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이들 국가는 자국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벤처지원 정책을 실시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미국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 대상 기술이 상업화 단계에 이르면 벤처캐피탈 등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중단하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연구 개발부터 상업화하여 자립할 단계까지 전반적인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지원대상 기술은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간부분의 투자를 이끌기 어려운 분야로 한정하고, 각 국의 사정에 맞는 민간의 투자가 가능한 시기에 지원을 중단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4. 벤처기업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화

2000년 9월 현재 벤처기업 등록 현황은 8,638업체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71.1%를 차지하는 6,139개의 업체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입주해 있다. 대덕 연구단지 등의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한 대전·충남지역이 633개업체인 것을 제외하고 수도권지역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벤처 집적시설의 경우 또한 서울·경기·인천지역에 88.2%가 집중되어 있어 벤처기업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벤처기업 지방화 촉진정책과 지방의 벤처기업 분위기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치는 벤처기업의 중앙집중화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방이전촉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주로 이용되는 정책이 세제지원인데 벤처기업의 경우는 이미 광범위한 세제지원을 이미 받고 있고, 대도시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중과세(지방세법 제280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¹²⁾(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¹³⁾(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2항), 법인 및 공장의

11) 민간 회사로서 벤처기업가와 투자자를 인터넷에서 연결하여 주로 중소도시의 벤처창업자들에게 투자를 소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감면
-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1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지방이전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274조 제 275조),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¹⁴⁾(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에서 지방 이전시 지원하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및 공제등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조세감면이 벤처기업에는 효과가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의 지방화 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해 20개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려 하고 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했던 입지 지원을 벤처기업 집적도 및 업종의 전문화와 기존 연구기반시설 활성화에 따른 발전가능성 및 벤처기업지원기능이 구비된 광범위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벤처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더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20~30억원 범위내에서 공동장비, 기반시설, 교육·연수분야 등에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등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예산지원과 제도적 지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건물 임대료를 올리는 원인이 되어,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의 입주를 막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벤처기업 육성지구의 형성보다는 지방의 임대료 상승만 유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4.2 벤처캐피탈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기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과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이상인 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벤처 캐피탈의 투자 실적이 기업가치 평가로 보기 어렵고, 특히 벤처 캐피탈 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근거로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창업투자회사의 누적 투자실적을 보면 2000년말 현재 회사분이 1조 1,089억원이고 조합 분이 4,852억원으로 총 투자액수는 1조 5,941억원으로 나타났고, 투자건수로는 2,37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투자잔액의 추세를 보면 97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8년에는 외환금융 위기의 여파로 처음으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99년 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97년 수준을 회복했다. 주식과 전환사채를 통한 지원을 투자라 하고 약정투자와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을 용자라 할 때 2000년말 기준으로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을 통틀어 투자의 금액과 비중이 각각 1조4,2795억원, 89.6%에 이르고, 용자의 경우

14) 투자세액의 공제 :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에는 1,662억 원으로 10.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응자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5> 창업투자회사의 자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연대별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0월	2000년
창업투자회사		52	51	48	53	61	72	82	130
투자건수		1,045	1,181	1,356	1,649	1,872	1,782	2,212	2,377
투 자 분 위 적	주식	123,759	140,319	157,528	272,553	400,611	341,336	579,363	981,259
	전환사채	47,392	50,876	56,278	65,646	72,722	90,602	127,111	56,147
	약정투자	41,901	100,049	138,817	302,362	332,909	233,022	170,303	21,580
	자금대여	95,907	105,114	118,652	216,022	264,524	264,867	177,335	49,951
	소계	308,959	396,358	471,275	856,583	1,070,766	929,827	1,054,112	1,108,937
	주식	88,575	79,748	88,691	110,023	155,745	169,240	245,901	412,537
	전환사채	17,769	17,643	49,462	74,252	74,427	84,805	67,125	53,659
	약정투자	5,969	40,420	158,486	170,590	165,901	114,444	99,674	12,566
	자금대여	11,162	11,365	18,282	26,408	22,171	19,546	23,860	6,491
	소계	123,475	149,176	314,921	381,273	418,244	388,035	436,560	485,253
총투자금액		432,434	545,534	786,196	1,237,856	1,489,010	1,317,862	1,490,672	1,594,190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이러한 사실은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간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볼 수 있다. 벤처캐피탈 자체도 그 규모가 영세하고 자산이 부실한 상태에 있는 업체의 수가 상당수이며, 99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창업투자회사의 수는 12개에 이르고, '99 상반기 중 부채가 100%이상 증가한 경우도 8개 사에 달하고 있다.

1999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활용시 애로사항이 심사요건 복잡 22.8%, 투자규모 과소 19.0%, 기업가치 저평 가 18.2%, 초기투자 기피 18.2% 순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기피로 인한 애로가 19.7%로 일반창업기업(5.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이 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기능이 아직 약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특정 업종에만 편중해 있음을 보여주는 인터벤처(주)의 1998년 11월 국내의 신설 창업투자회사 중 20개 사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의료 및 생명공학이 많은 비중(20%)을 차지하였고, 멀티미디어(16%)와 반도체 분야(12%)도 선호하는 투자 업종으로 꼽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4%정도의 벤처캐피탈이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부실창업 투자회사 현황

창투사	부실사유
대농창업투자	모기업 대농 법정관리, 자본잠식 89%
대방창업투자	모기업 태일정밀 회의, 자본잠식 160%
경인창업투자	모기업 신호제지 워크아웃
신원창업투자	모기업 신원 워크아웃
성원창업투자	모기업 대한종금 인가취소
부산창업투자	자본잠식 113%
대주창업투자	자본잠식 61%

* 자료: 1999년 10월 1일 한국경제신문

<표7> 벤처캐피탈 이용시 애로사항(가중누계) (단위 : %)

구 분	투자규모 과소	투자기간 단기	기업가치 저평가	고금리	초기투자 기피	자금 조기상환	심사요건 복잡	리베이트 요구	기타
전 체	19.0	6.8	18.2	8.1	18.2	1.9	22.8	0.4	4.6
벤처기업	18.6	5.9	17.8	7.8	19.7	1.2	23.5	0.4	5.1
일반창업기업	22.0	15.3	22.0	10.2	5.1	8.5	16.9	-	-

* 자료: '99년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처럼 벤처캐피탈 자체의 부실과 함께 투자 대상기업 및 업종선택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업화 단계까지의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최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이 벤처기업의 선정요건이 되는 것은 첨단기술 분야가 벤처기업 선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낳게 한다.

4.3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산정 자체의 모순

연구개발 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10%인 기업이며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 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을 한다.

연구개발비 비율을 증명하기 위하기 ①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확인·증명한 서류 ②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연구 개발비 비율을 증명하는 수단이 모두 회계 장부를 근거로 하고 사후 관리 또한 이러한 회계장부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벤처기업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즉 벤처기업에 선

정되고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해당 기업들은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연구개발비 비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비율을 5%~10% 산업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구개발에 있어서 경제성을 이룬 기업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된다. 2000년 중소기업청의 「벤처백서」에 따르면 시장성장성과 기술력을 결합하여 4가지 벤처기업 유형을 기술력이 높고 시장성장성도 높은 하이테크형, 기술력은 높지만 시장성장성이 높지 않은 기술집약형, 기술력은 낮지만 시장성장성이 높은 니치형과 기술력과 시장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일반벤처형으로 구분하고, 기업 유형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율 차이를 분산분석(ANOVA)하였다. <표8>을 보면 연구개발비 비율은 하이테크형이 83%로 가장 높고, 기술집약형이 38%로 두번째이고, 니치형과 일반벤처형은 각각 11%와 8%의 연구개발비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절대액인 연구개발비는 기술집약형이 5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테크형이 3억3천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니치형과 일반벤처형을 비교해 보아도 일반벤처형의 연구개발비비율이 더 낮지만 절대액은 많았다.

<표8> 벤처기업유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차이

구분	하이테크형	기술집약형	니치형	일반벤처형	전체평균
연구개발비율 (98년, %)	83% (n=686)	38% (n=279)	11% (n=377)	8% (n=234)	46% (n=1558)
연구개발비 (98년, 백만원)	325 (n=758)	518 (n=297)	184 (n=493)	208 (n=268)	300 (n=1816)
연구개발비 증가율 (98년)	70% (n=485)	37% (n=230)	47% (n=297)	43% (n=208)	54% (n=1220)

※ 자료: 2000년 벤처백서(중소기업청)

즉 기술집약형과 일반벤처형이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절대액의 증가율은 하이테크형이 가장 높아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비율은 매출규모가 클 경우 그 투자의 절대액에 관계없이 낮게 나타나므로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매출규모가 크거나, 경제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룬 기업 등에 불리한 작용을 하게된다.

4.4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 및 연구계획에 대한 지원부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 형태를 갖춘 창업이후의 상태서만 가능하다.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창업 후 7년 이내에 벤처캐피탈로부터 자본금의 일정 비율만큼 투자를 받아야하고, 연구개발 투자기업과 신기술 투자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의 총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미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단계에서 지원이 시작

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 이외의 일반금융권에서도 리스크를 크게 느끼지 않고 그 수익성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시장기능에 따라 사업의 성장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의 벤처기업 선정요건은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나 연구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실적이 없더라도 평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술평가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술 평가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은 완료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업지원에 그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표9>의 중소기업청에서 3,301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창업자의 배태조직 유형의 분포를 보면, 벤처기업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배태조직으로 하는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이 두번째로 29%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대학이나 연구소를 배태 조직으로 응답한 경우는 아주 작아서 8%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벤처기업의 선정과정에서 대학이나 연구소등에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9> 창업자 배태조직 유형

구 분	대학 및 연구소	대기업근무	중소기업근무	회사운영 및 자영업	기타
업체수	274	986	1240	479	322
비율	8%	29%	38%	15%	10%

자료: 중소기업청

해외 벤처정책의 성공사례에서는 국가의 벤처기업 지원은 민간이 투자를 꺼려하는 기술개발단계부터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시작하여 각국의 여건에 맞추어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 있는 단계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법에 의한 벤처기업 선정과 지원은 기술성 있는 기준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벤처기업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동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고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기술개발 이전 단계의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장소적지원 정도로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단계부터 공적 자금의 지원이 시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5 네가티브 시스템 적용에 따른 첨단기술에 대한 상대적 지원부족

정부는 벤처기업 범위를 지금까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여 Positive System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0년 7월부터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여관업 등 48개 업종(산업분류단위 5단위 기준)을 제외한 전 업종(1,144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 대상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낭비와 재정의 부실

및 금융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앞에서 보여준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내듯이 확인 받은 벤처기업 중 기술집약적인 신규 창업기업의 비율이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의 특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벤처기업들도 일부 포함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따를 경우 함량미달의 벤처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벤처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예산과 금융자금이 지원되고, 첨단기술분야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4.6 개선방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자금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조세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어 실질적인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동 법에서 벤처 기업 정의를 틀 속에 고정시키고 대상기업을 제대로 선정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여 최첨단 기술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보강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 경쟁에서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최첨단기술 관련 벤처기업의 육성은 이들과 차별화 된 지원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법 제18조4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제18조5의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한 업종의 벤처기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높은 임대료등 촉진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효율적인 벤처자금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동법 제2조¹⁵⁾의 벤처기업 정의 부분에서 1~4항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 포괄규정을 첨단기술 분야로 한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세째, 동법 제2조의 벤처기업 선정요건을 삭제하고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요건과 인력구성, 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선정은 평가기관을 통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 매출실적 등으로 벤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현행 선정요건은 공적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단계의 첨단기술을 소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명확한 기준 아래서는 평가가 어려운 무형적 가치의

15)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8·12·30, 2000·1·21 법6194·법6195, 2001·2·3]

기술과 급격히 변화하는 신기술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기성 산업의 평가에나 이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평가기관은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개정된 벤처기업의 정의에 일치되는 최첨단 기술의 기업을(또는 아이디어) 선정하는 세분화된 산업별 지침을 기준으로 재량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동법 제2조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벤처기업 선정요건을 법으로 묶어서 현실에 뒤지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의 지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네째, 기업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은 개인 등의 연구계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공적기금의 지원을 받아 상업화 단계가 가능하도록 동법 제15조¹⁶⁾의 (기관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중소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의 연구계획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¹⁷⁾에서 기술개발지원계획의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의 자금지원을 받을 때까지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 취지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결 론

벤처기업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경제활력 창출 및 생산성 증대에 있어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창출이 아닌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사회전반의 효율 증대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조세, 입지, 인력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법은 결국 벤처기업의 양적인 확대이외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여,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이 벤처기업선정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은 투자업종선택에 객관성 없었고,

16) 제15조 (기관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개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제9조 (기술개발지원대상) ① 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초의 자금지원을 받을 때까지 창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이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2.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3. 기타 지원계획시행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많은 리스크를 않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업종이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 개발비 투자비율을 벤처기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회계장부 조작의 가능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절대적인 매출실적의 향상과 연구개발비의 비용효율성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율이 낮게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주요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 기업형태를 가지지 않은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나 연구계획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시기에는 이용되지 못하다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시점에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벤처기업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 업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분야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하여 첫째, 벤처기업의 선정 범위를 첨단기술 분야로 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기존의 벤처기업 선정 요건을 삭제하고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요건과 인력구성, 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선정은 평가기관을 통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주어 급변하는 첨단 기술분야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부여하고, 셋째, 기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의 연구계획에까지 공적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벤처기업 지방화정책의 일환인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은 촉진지구라는 인위적인 구역을 정하여 임대료 상승등으로 지원을 받아야할 벤처기업이 소외되는 부작용을 안고 있으므로 촉진지구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선정한 업종의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게 개정한다면 벤처기업의 지역유인과 효율적인 자금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오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박종영 (2000),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연구원
박장혁 (1996), “지방중소기업의 업종별 경쟁력 비교분석”, 중소기업 연구원.
이진주 (1984), “모험기업·모험자본·기술창업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이재길 (1997), “한국 벤처기업 육성정책”, '97 한·미 벤처포럼,
 벤처기업협회·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주최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9),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보고서”.
홍성도 (1997), “벤처비지니스·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Bollinger et al.(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vol. 12.
Scott A. J., Storper M. (1992), “Regional Development Reconsidered”,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Industrial Response,
 Flexible Specialisation, London, Belhaven Press.